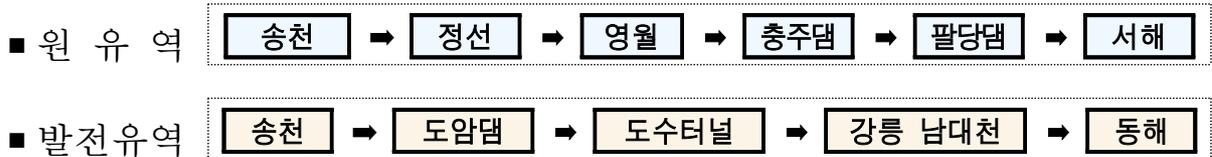


사업 기간	임기내 완료□ 임기후 계속☑	사업 성격	신규사업□ 계속사업☑	예산 구분	예산사업□ 비예산사업☑	주관 부서	환경과 수질총량팀	담당자	전준혁 2910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

1. 시설현황

- 시설년도 : 1990. 5월 [관리 : 한국수력원자력(주)]
- 시설위치 :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
- 시설용량 : 82,000kw(41,000kw×2기)



2. 그간 진행상황

- '90. 5. : 도암댐 준공(담수개시)
- '95. 6. : 선택 취수탑 공사 댐 하부 퇴적물 방류 정선지역 하천 오염
- '95. 6. 24. : 댐 하부 가배수로 영구폐쇄 ※한국전력, 정선군 주민 합의
- '01. 3. :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 ※남대천 수질오염 주민반발
- '02. 8. 31. ~ '02. 9. 1. : 태풍 “루사” 수해 피해 발생
- '02. 10. 30. : 도암댐 해체추진위원회 구성(정선, 강릉, 영월, 평창 주민)
- '05. 12. 21. :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
 - 도암댐 홍수조절용 사용 및 수질개선 조치이행 결정
- '17. 8. :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연구 용역 완료
 - 도암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피해액 추정 : 1조 3,064억원
- '19. 2. 28. : 한강상류 통합물관리 상생협의회 남한강산류 실무분과 1차 회의
 - '22. 6. 14. : 원주지방환경청 주관, 도암호 수질개선 등 논의 9차 진행
 - ※ 제9차 상생협의회부터 “도암댐 문제”안건 제외, 강원도에서 “도암댐 수질 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협의체” 별도 추진
- '19. 12. : 한수원 “도암댐 루미라이트 살포 수질개선 실증사업” 제안
- '22. 3. 30. : 강릉시·한수원 발전 재개 공론화 MOU체결

- '22. 4. 15. :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(1차)
- '22. 7. 28. : 도암호 수질개선 및 문제해결 논의 회의(강원도)
 - 강원도에서 “도암댐 활용방안 용역” 추진 제안
- '22. 9. 16. :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(2차)
- '22. 10. 25. :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방문 설명
 -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도암댐 문제 해결 건의
- '22. 11. 2. : 정선군 번영연합회 “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” 성명서 발표
- '22. 11. 7. : 정선군의회 “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” 성명서 발표
- '22. 11. 30. :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(3차)
 - (정선군 의견제시) 발전방류를 전제한 과업 내용 삭제 요구, 발전방류를 전제한 용역으로 추진될 경우 정선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공동 용역 불참
- '22. 12. 20. : 정선군 번영연합회장 강원도지사실 방문 “도암댐 문제 해결 건의서” 전달
- '22. 12. 27. : 정선군 번영연합회장 이철규 국회의원실 방문 “도암댐 문제해결 건의서” 전달

3. 문제점

- 도암댐 건립 이후 연중 탁수(濁水) 유하로 인한 생태계 및 경제적 피해 발생('95 ~ '16년 피해액 : 1조 3,064억원)
- 여름 강우 시 도암댐 하류지역 탁수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업소 환불 피해 발생('19년: 87일, '20년: 125일, '21년: 28일 '22년: 107일)
- 한수원 최근 도암댐 발전 재개(남대천 방류) 활동 지속
 - 강릉시·한수원 발전 재개 공론화 MOU체결('22. 3. 30.)
 - 한수원 『강릉수력발전소 가치평가를 위한 자문용역』 추진('22. 10. 31. 매일경제 보도)
 - 한수원 『강릉수력 방류수 저류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』 추진('22. 11. 2. 강원일보 보도)

4. 향후대책

-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 조속 이행
 - 댐 용도는 원칙적으로 홍수조절용 사용, 수질개선, 댐내 퇴적물 준설 등
- (수질개선) 도암댐 내 퇴적물 준설 후 “하부 방류구를 통한 자연유하”
- (발전계획 철회) 도암댐 발전 재개 시 남한강 수원(水原) 감소 및 생태계 파괴
 - 한수원의 도암댐 수처리제약품 살포 및 발전방류 계획 반대
- (주민지원 법제화)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 “마목” 신설

마.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댐 건설로 수질 등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,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정책이 없었던 지역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

- 송천 생태계 보전 및 도암댐 대응 심포지엄 개최 : '23년 상, 하반기
- 『도암댐 문제 해결』 국회 정책간담회 : '23년 하반기
- 도암댐 하류 수계 지자체 사회단체 협의체 구성
 - 정선, 영월, 강릉, 단양, 충주지역 협의체 구성
- 도암댐 문제해결 대응 전략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
 - 도암댐 방류수 환경영향 모니터링 용역 : '23. 3. ~ 11., 20백만원
 -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연구 용역 : '22. 6. ~ '23. 4., 150백만원